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뇌변변장애인인권교육 교재



인권공감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뇌병변장애인인권교육 교재

인권공감



목차

책을 펴내며	04
장애인 인권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일러두기	06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I. 기초가 되는 인권 살피기	10
1. 인권의 의미와 원칙	11
2.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30
II. 조직문화 안에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차별	36
1. 성차별: 은근 기분 나쁜, 이런 것도 성차별일까요?	37
2. 경력차별: 내가 해봐서 아는데...	45
3. 나이차별: 내 나이가 벼슬인가? 잘못인가?	53



Ⅲ.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58
1. 통합교육: 장애 학생인 저도 캠프 가고 싶어요.	59
2. 노동권: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타당한가요?	67
3. 자기결정권: 굳이 말려야 할까요?	73
4. 활동지원 연령제한: 65세가 되면 비장애인이 되나요?	79
5. 장애유형간 차별: 장애인끼리 왜 차별하나요?	87
6. 장애인예술: 장애인예술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93
7. 장애인연금: 나는 경증인가요? 중증인가요?	99
8. 탈시설: 잘 살고 있는 아이를 왜 꼬드겨서...	105
9. 재난과 장애: 가난하다고 더 많이 죽어야 하나?	115
10. 의사소통권리: 내 말이 들리시나요?	125
Ⅳ. 부록	132

장애인 인권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인권’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면서 일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권’, 그중에서도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숨 쉬는 것처럼 이해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때맞춰 발간된 이 책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며 권리옹호에 힘쓰는 활동가와 회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 장애인, 장애인권리를 소수만의 이야기로 여깁니다. 장애인 인권, 권리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의 일상과는 먼 일로,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혐오, 인권침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권의 대원칙은 ‘보편성’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권의 힘을 가지고 권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장애인을, 특별한 그 무엇으로 대할수록 장애인의 권리는 비장애인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집단의 문제로만 인식됩니다.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과 현장의 사례들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인권에 대한 이해, 다양한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뤄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작은 책이 뇌병변장애인 활동가, 회원,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함께 읽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는 걸 알고 태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일일 뿐입니다. -어느 루마니아 인권교육가

이 책이 기획되어 인쇄되기까지 힘을 모아 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편집과 인쇄에 정성을 한 응큼씨 주시는 '언제나 봄'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드림



일러두기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이 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나아장애인권교육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기초가 되는 인권 살피기’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가끔은 인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이것!”이라 말하기 어려운 데다가, 여러 갈래의 생각이 꼬이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되짚어 보는 것도 생각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장과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삼아 <인권의 의미와 원칙>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의 사회적 이해>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데 필요한 관점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와 인권을 말하고자 할 때 ‘장애란 무엇이고,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은 문득문득 고개를 내밉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장애인 인권’이라는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분이라면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2장은 이 책의 주요 독자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원임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과 독특함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나, 사회 구성원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새로운 '나'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조직문화 안에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할지 모를 차별의 요소로 '성차별', '경력차별', '나이차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나와 동료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 조직의 문화를 돌아보고 바뀌어나가는 계기로, 큰 소득이라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3장은 <사례로 살피는 장애인권 다지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인권적인 만남을 기대하지만, 실상에서는 가치관의 다름에서 오는 입장 혹은 여건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인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10가지 주제 즉 통합교육, 노동권, 자기결정권, 활동지원사 연령제한, 장애 유형별 차별, 장애인 문화예술,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탈시설, 재난 앞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등을 짚아서 사례로 풀어보는 인권 다지기를 마련했습니다.

인권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매뉴얼에서는 <사례로 보는 인권>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장과 3장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개요 :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만한 일로, 인권의 문 앞에서 당황하고 고민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설정하여 논의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색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2. 핵심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번 사례에서 만난 사람과 상황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의견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눌 만한 주제를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슈가 제기된다면 물론 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다양한 주제를 말해 봅니다.

3. 더 고민해 볼 내용 : 핵심 이슈에서 제시된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번에서 제시된 사례를 더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혹시나 사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사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토론에 임하기 전에 미리 읽어두면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이후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인권 살피기

1-1

인권의 의미와 원칙

* 이 글은 나아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 발간한
〈장애인권교육가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매뉴얼'〉 중 일부를 발췌하고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인권의 보편성 | 누구나, 예외없이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보편성'은 허구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현실의 불평등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은 더욱 더 위력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인권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도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전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효과적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특권과 예외에 맞서온 인권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권은 늘 ‘특권’이나 ‘예외’에 맞서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열을 가르고 우월한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특권의 세계’에 맞서고, “거진 인권보다는 다른 논리가 우선하는 곳이야”라는 식으로 인권의 예외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에 맞서 왔던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장애인이나,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어리거나, 여성이거나, 흑인이거나, 너희 나라가 아니거나 등 갖가지 이유로 인권을 부정당해온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왔습니다.

한 예로 ‘근대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혁명이 터진 지 2년 후, 올랭프 드 구즈라는 여성은 이렇게 프랑스 사회에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의 주인인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남성들에게는 보장된 권리가 왜 여성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가. 여성들에게 연단에 오를 권리는 왜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밑바탕에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수많은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을 불리일으켰습니다.

2) 보편성은 획일성과 다르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곧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조건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입학이 거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가 가진 장애를 고려하여 학교의 공간도, 교육 방식도, 교육 기자재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평등을 일구기 위한 한시적인 우대 조치이기 때문에 차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이 진정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과 맥락을 적극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면,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권의 보편성에 비추어본다면, 인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들의 싸움은 장애인만을 위한 싸움일 뿐 아니라 인권을 부정당해 온 다른 사람들이 벌여온 거대한 싸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무슨!!!'이라는 식으로 장애인의 권리 요구가 외면당할 때, '장애인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라는 식으로 규격화된 틀 속에 장애인의 삶을 우격다짐으로 구겨 넣을 때, 인권의 보편성은 장애인들의 권리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람에게 자기 생활양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왜 시설이 지급하는 똑같은 생활복을 입어야 할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들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싶은데,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왜 후원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히려 외출 금지령을 당해야 할까? 비장애인들은 교통비만 있으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돈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을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 친구와 나란히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보는 장면은 왜 상상하기 힘들까? 이 핸드폰 설명서는 지적장애인들도 읽을 수 있을까? 인권의 보편성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풀무질하는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인권의 기본성 | 인권은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지 않은 권리가 부딪힐 할 때는 기본이 되는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른 차들이 자리와 순서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지요.

인권의 기본성은 각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나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도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인권이 박탈되었을 때 그 상황은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비필수적 권리가 충돌할 때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이 너무 비싸서, 값싼 약조차 살 돈이 없어서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를 떠올려 봅시다. 환자의 생명권과 약에 대한 소유권이 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기본적이라면, 장애인도 권리를 양보할 수 없다



인권의 기본성에 비추어본다면, 인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나 생떼질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권리를 요구할 때면 곧잘 ‘시기상조’론이 고개를 쳐들곤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 에!’,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서!’,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곧잘 돌아오곤 합니다. 행여 장애인 지원 예산이 늘어나기라도 하면 ‘세금도 내지 않는 장애인에게 왜 우리 세금을 퍼 주냐’는 식의 비난을 쏟아 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갖추기 위한 정책은 당연한 조치이고 대개 뒤늦은 조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의 기본성이라는 원칙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본이 나중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누구의 ‘특권’을 위한 주장인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동만 할 수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조받지 못한다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꺾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그저 ‘머무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핑계로 활동지원 시간을 고무줄마냥 줄였다 말았다 하는 것은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3.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 자유로울수록 평등하고 평등할수록 자유로운

세계인권선언은 인류는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열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도, 사람을 궁핍으로 몰아넣는 것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자유와 평등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뺨’과 ‘자유’, 평등과 자유,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권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기대어 있는 권리인데도 말이지요. 사회권과 자유권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것은 하나를 잃고서는 다른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이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은 공포에 놓인다

가까운 예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남편에게 의존해서 사는 여성을 떠올려 봅시다. 이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거나 남편에게 맞서 폭력을 중단시키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매일 장시간 중노동에 혹사당하는 사람들이 매체에 실린 뉴스들을 꼼꼼 따라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거나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당을 포기한 채 투표를 하러 가는 일도 여간해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현실은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를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평등도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상실이 경제적 평등을 잠식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아주 오랫동안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모임을 만들 수도 없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상상하기도 힘든 비참한 노동조건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란 ‘굶어 죽을 자유’ 뿐이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외칠 자유, 모임을 만들어 힘을 보여줄 수 있

는 자유, 자기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할 자유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경제적 권리는 노동자의 시민·정치적 자유 없이는 확보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자유와 평등, 자유권과 사회권은 대립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더 많이 평등해질 수 있고 더 많이 평등해질수록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집회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건물 사이 육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2019. 3.26)

장애인에게도 자유와 존엄한 생활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을 분석할 때나 그 사건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시설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사건으로 보도됩니다. 또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무보수 강제노동이 강요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은 뿌리 뽑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의 감시망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드러나기 힘들고, 거주시설 이용인들도 사실상 감금상태나 다름없이 이동의 자유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시설거주 이용인이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자유가 주어져 있다하더라도 막상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도 생존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금상태나 다름없는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하게 되는 가난한 비장애인의 현실을 겹쳐 떠오르게 합니다.

시설 안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거주 이용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해도 대규모 단체생활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 이용인보다 지원인력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의 욕구가 살피지고 지원되기보다 관리와 통제로 기관운영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약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자유도, 밥을 국에 말아 먹을지 그냥 먹을지 선택할 자유도, 씻고 싶을 때 씻을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유도,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될 때 장애인들은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로 그저 생존하기만 해야 합니다. 존엄을 박탈당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 없이는 평등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시설 안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가 동시에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권리가 함께 보장될 때 사람은 비로소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4. 인권의 저항성과 역사성 | 저항으로 쓴 인권의 역사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짓밟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은 ‘반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잘못을 바로잡거나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국민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 폭정을 일삼는 ‘왕’ 오늘날에는 대표자, 정권, 법, 기업 등을 바꿀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을 뒤집으면 국가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인권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국가에는 <3대 인권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직접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존중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보호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표와 일정을 정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실현의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는 일반 시민의 인권 존중 책임보다 더욱 무겁다고 봐야 합니다. 이 의무를 스스로 거스르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고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불의한 권력을 바로잡을 권리!

사람들이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에 맞서 스스로 빼앗긴 인권을 되찾거나 부인당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물론 저항 혹은 불복종의 형태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하나가 문제일 수도 있고, 책임을 지닌 공직자 한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 방향 하나가 문제일 수도 있고, 정권 전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저항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은 근대시민혁명과 더불어 등장했습니다. 불의한 봉건체제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항성은 인권의 탄생 비결이자 인권을 지속적으로 밀어가는 힘의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도 부당한 정권에 맞서 떨

쳐 일어났던 4.19 혁명의 저항 정신을 헌법 정신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권리이면서 권리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에 항거하며 흑인들의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해 흑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수많은 집회와 행진을 열었습니다. 현행법 위반으로 수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곤 했지요. 이 투쟁을 이끈 지도자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연좌데모를 하고 직접행동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위기와 긴장감을 조장시켜,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이지요. 더 높은 양심의 법, 인권의 법을 따르면서 현실의 법이 가진 폭력성을 고발하는 저항이 없는 한, 인권보장은커녕 협상의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다는 통찰이 엿보입니다.

저항을 통해 확장되어 온 인권!

저항권은 불복종할 권리, 인권을 옹호할 권리라고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인권의 무대로부터 배제됐던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는 일도, 시대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을 얻어내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권이 등장했던 근대 초기,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만도 2백 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고, 20세기 초반에서야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국제인권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는 정보의 집적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도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희생과 끈기 속에서 간신히 인권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권리나 새로운 이름의 권리가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의 역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을 아무리 현재 상태에 붙들어 매고 고정시켜 두려 해도 인권은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확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사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인권의 역동성과 역사성을 만들어온 것이니까요.

장애인의 투쟁이 장애인 권리의 역사를 일구어온 힘

인권의 저항성은 차별에 맞선 장애인들의 투쟁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안면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범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체들이 확장된 만큼 장애인의 권리 내용도 더불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나 권리 주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권리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면, 지금은 특수학교가 오히려 분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꿰뚫어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주요 요구가 이동권 보장에 그쳤다면, 현재는 탈시설의 권리와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조, 또 이를 묵인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장애인들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요구들을 제기했기에, 그리고 열심히 투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권리의 주체도, 장애인 권리의 내용도 당사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2019년 1842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결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쟁취하다

5. 실정법보다 더 높은 인권 | 법에 의한 통치로 보호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 the rule of the law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자의 기분이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인권보장의 잣대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명확하게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의 법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 법전에 기록된 법실정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실정법이 더 큰 양심의 법, 인권의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그에 못 미친다면 실정법보다 ‘더 높은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에 의한 통치’ 또는 ‘법의 지배’의 참뜻입니다. 법의 지배와 준법의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법 이전에 사람, 실정법 이전에 인권

인권이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반면,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차별정책}도, 히틀러정권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도, 한국의 민주화운동 탄압도 당시에는 모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합법적 인권침해’였습니다.

법이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이름과는 달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못 받는 일이 허다한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손길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정법에 보장된 만큼만 인권이라고 수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고, 실정법이 있기 전에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틀 안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인권의 틀 안에서 법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높은 양심의 법, 인권의 법

1994년 영국의 여성 세 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전투기에 몰래 숨어 들어가 준비해간 가정용 망치로 무기 발사 장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전투기가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팔려간다면, 무고한 동티모르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물론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동티모르의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투기를 망가뜨린 행위는 ‘파괴’ 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그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 부수는 행위는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들은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정법은 어겼을지 언정 그보다 더 높은 양심의 법, 인간의 법에는 충실했다는 것을 법원조차도 인정한 셈입니다.

현실의 법보다 인권은 더 크게 말한다

인권의 울림이 실정법보다 훨씬 높고 크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투쟁 현장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철로에 몸을 묶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느라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너느라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때나 장애인들에게 주로 쏟아진 비난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비난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 더 크게 울려 퍼진 것은 인권을 부정당한 채 살아온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한 장애인은 자기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육교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육교 아래의 도로를 당당히 건너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행동은 분명 법을 어긴 무단횡단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분의 끈질긴 무단횡단 끝에 마침내 육교가 사라지고 모두가 건너기 편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존재를 건 무단횡단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법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의 주인들이 실정법의 한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법을 넘어선 전망을 보여줄 때 인권을 억압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 제도화하라! 몸에 현수막을 부착한 집회참가자들이 한강대교를 기어기어 투쟁하고 있다.
(2006. 4. 27)

6. 인권의 상호의존성 | 기대어선 우리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내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 홀로,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는 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기에 당연히 여러 권리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한, 혹은 나만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한, 나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무너진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타인,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만드는 ‘틀’, 곧 질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라면, 교사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학교이겠지요. 또한 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갈 수 있는 사회는 누구라도 함부로 잡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처음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몰살하기 시작한 히틀러 정권은 나중에 그 폭정의 망치를 유대인, 동성애자, 장애인에게로 확대했습니다.

내가 표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다른 집단을 겨누었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국민에게 폭정을 휘두르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언제 선전포고를 할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를 함부로 점령하는 나라는 자기네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전쟁 도구로 동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내가 숨 쉬는 공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권이 이야기하는 책임이 나옵니다.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할 책임을 일깨웁니다. 이 때 연대는 타인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자 나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권은 서로 기대어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싸움이 이루어낸 변화를 살펴봅시다. 장애인들이 벌금과 구속까지 감내하면서 싸운 결과 지금 대다수의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이제 노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 것이지요.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사실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싸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함부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사회에서 아예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노동권을 얻어내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인격적 대접을 받는 일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주류의 기준과 속도만을 잣대로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고 '열등한' 사람들을 속아내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각자의 속도를 인정받는 날을, 무능력자가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날을 기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밀받침이 되는 이유도, 장애인들이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의 세포를 되살리는 일

앞에서 살펴본 인권의 원칙과 성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권이 격려되고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가 아니라 인권이 함부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주인들도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인권을 쉽게 포기하거나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과 부가 인격을 좌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주인들도 사람을 가르고 우열을 평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치즘이 히틀러라는 개인의 잔혹성으로부터 싹터 자라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넓은 바다에서 꿈틀거리는 인권이 아니라 작은 어항 안에 갇힌 제한된 권리만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혹한 고문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소식에는 분노하면서도 한겨울에도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거나 촛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다 화마에 휩쓸린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그저 안타깝게만 여길 뿐 국가에 대해 격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끊임없이 반인권적 질서를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이어갈 때, 죽어버린 인권의 세포를 되살려 인권감수성과 의식을 베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권의 세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인권의 원칙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삶부터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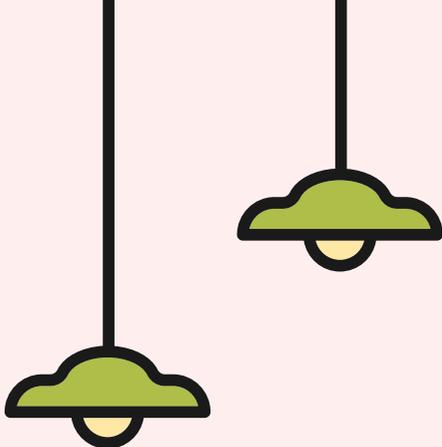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수자는 적은 숫자로 얘기되는 소수(少數)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가 적지 않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은 소수자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는 토착민 원주민의 인구가 많지만, 정복민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소수자가 됩니다.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힘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위치와 힘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회에는 사람들의 위치와 힘을 가능하는 '사회적 척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수자인가?'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수자인지?'를 결정짓는 사회적 척도인 '가치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은 손상과 질병이 없는 완벽한 신체를 정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소수자로 규정되어 위치가 낮아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손상과 질병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손상과 질병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사회에 의해 장애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인권 살피기

1-2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장애의 개별적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어떤 개념을 단 두 가지의 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두 가지를 대립적으로 봄으로써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애 차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첫 걸음으로써는 상당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구분	사회적 모델	개별적 모델 (의료적 모델)
장애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	차별, 권리침해, 사회적 구조	개인의 신체, 비장애인의 태도
장애를 둘러싼 문제 해결의 주체	당사자	의료인, 복지 전문가, 행정가
장애를 둘러싼 문제 해결의 방식	정치, 사회행동, 권리	정책, 개별적 치료, 전문가 개입

먼저 장애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모델에서는 차별과 사회적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의 고등 교육률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이 교육을 못 받은 원인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의 입시전형과 커리큘럼의 구성 등 장애인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별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문제 삼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당사자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차별을 직시하고,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별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기존의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의료인이 장애인의 신체를 비장애인에게 가깝게 만들어줘야 하며, 복지 전문가들이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입해야 하며, 행정가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수정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정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장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 정치인과 행정가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동정이나 시혜 차원에서 읍소하는 것이 아닌 권리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기자회견, 토론회, 농성, 점거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식일 것입니다.

반면 개별적 모델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변화를 통하거나 문제의 일부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개인의 학습능력을 더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대학교 안에 장애인 특수과정을 만들어 ‘그들만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애 차별을 본질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방식은 개별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 만들어냈던 성과들은 개별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는 병원이나 복지관이 아닌 훑고 뜨거운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만들어지고 공고해 집니다.

‘장애’에 대한 주류적 관점은 무엇이 문제일까¹⁾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주류적인 장애의 정의는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손상impairment, 기능제약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라는 삼중적 구별을 기반으로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여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근간으로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ICIDH-21997 및 ICF2001로 발전되었습니다.

1) 김도연(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에서 발췌 요약

건강 조건 (health condition)	손상 (impairment)	기능제약 (disability)	사회적 불리 (handicap)
병리학적인 변화로서의 증상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했다.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신체적 차원 (body level)	개인적 차원 (person level)	사회적 차원 (society level)

ICDH-2는 용어를 긍정적 표현으로 변경하고(기능제약→활동, 사회적 불리→참여) 상황적 요인을 추가하였으며, ICF는 ICDH-2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용어를 다시 한 번 수정하고(손상→신체 기능과 구조) 상황요인과의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류적 정의에 있어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입니다. 손상(impairment)→기능제약(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라는 3단계 도식에서 장애의 본질과 원인은 결국 개인의 몸이 지니고 있는 손상에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손상을 잘 치료하거나, 치료하다가 안 되면 재활을 통해 소위 잔존 능력을 강화시켜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주요 각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를 보면 모두 WHO의 도식과 장애의 의료모델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영국의 '차별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 UPIAS :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이 제시했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장애인복지법, 1999)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일본 (장애인기본법, 1993)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 독일 (장애인평등에관한법, 2000)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의 전형적 상태와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

기존의 주류적 정의가 자신이 지닌 한계와 비판을 무마하고 가리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도식을 동원해 장애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위의 정의는 손상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장애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인간학적 속성 내지는 특질인 손상이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장애라는 상태로 만들어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얼른 확 다가오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예를 통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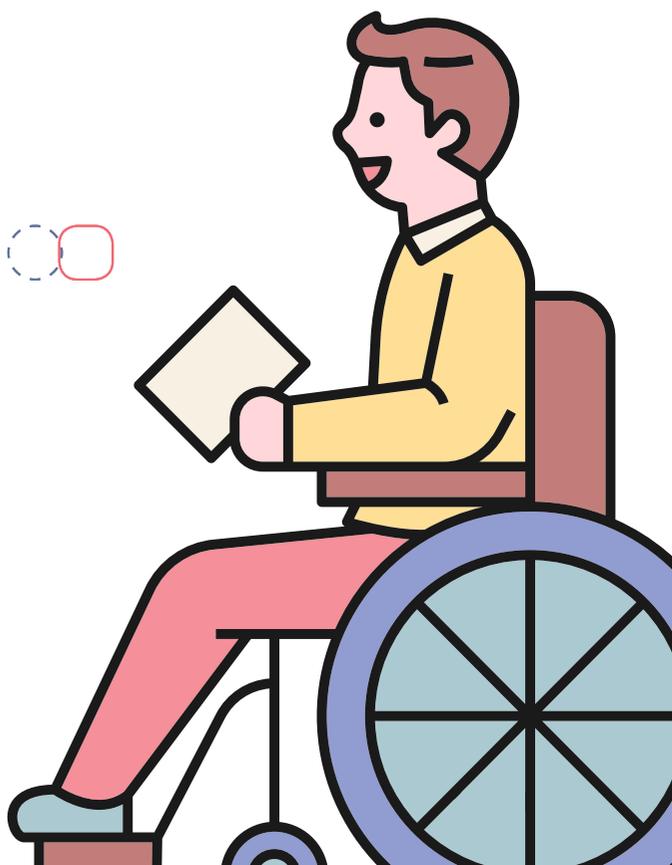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impairment)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다. 장애(disability)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서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손상과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상을 팔다리의 일부나 전부가 부재한 것, 또는 팔다리, 몸의 기관이나 작동방식에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주류 사회활동의 참여에서 배제하는 당대의 사회 조직에 의해 야기된 불리함이나 활동의 제한을 말한다.

서구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이에 따른 식민 활동이 전개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은 19세기 후반까지도 노예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 시대에 흑인은 곧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일까요? 노예가 된 원인이 검은 피부색 때문이었나요? 그들은 여전히 피부가 검은 흑인인데 왜 노예가 아니지요? 장애의 원인을 육체적 손상에서 찾는 것은 노예가 된 원인을 검은 피부색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환경 속에서 노예로 존재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신질환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비만은 비만일 뿐인데, 현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질병으로 규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상은 손상일 뿐입니다.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손상(impairment)은 장애(disability)가 됩니다!

영감



조직 문화 안에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차별

2-1

은근 기분 나쁜,
이런 것도 성차별일까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간부로서 활동가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센터 조직에 대한 이해와 결의를 높이는 것을 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회식자리도 자주 마련했습니다. 업무시간엔 정신없이 바쁘고, 그나마 퇴근 이후에나 조금 여유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 활동가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회식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남성에 비혼이라 거기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지요.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센터의 지향상 이 문제제기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센터장님과의 논의 끝에 앞으로 공식적인 회식은 저녁 시간을 피하고 점심시간에 갖기로 했습니다. 점심 회식이 있을 때에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여유 있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퇴근은 정시에 하고요. 이 조치에 대해 활동가들도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고 원만히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평소 친했던 남자 활동가 몇 명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평소 친했던 사람들끼리의 술자리라 그런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과음을 하고 다소 실수를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남자들끼리만 어울리다보니 그런 부분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성 활동가들이 있을 때에는 말하지 못하는 주제도 많고,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있을라치면 미투로 확대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술자리에서까지 긴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 횟수가 늘어났고, 즐거운 자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참석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모임 자체가 즐거우니 참여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여성 활동가가 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남직원들끼리 몰려다니는 술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억울했습니다.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시킨 적도 없습니다. 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녁시간에 마음 통하는 동료들과 갖는 술자리까지 간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저녁 회식을 없앴고, 나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친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니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못된 심보인지. 요즘 젊은 여자들, 페미니즘을 무조건 우기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요?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원하는 대로 해준 것도 문제일까요?

- # 사례의 여성 활동가가 원하는 대로 낮시간 회식으로 돌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저녁 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 # 자신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부담감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인 모임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닐까요?

2. 남성도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는 별개로 남성에 대한 거짓 미투도 많은 상황입니다. 남성 스스로 여성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안전함을 추구할 권리도 있지 않을까요?
- #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여성과 만나지 않기)에 대한 비판은 과한 것 아닐까요?

3. 더 고민해 볼 내용

1. 펜스 룰

펜스 룰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마이크 펜스가 2002년에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성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하던 것이 펜스 이후에 비종교인에게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이후 펜스 룰이 급격히 알려졌습니다. 펜스 룰은 성범죄 무고에 대한 남성의 무기로 인식되면서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과 접촉 자체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이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 펜스 룰의 한계

언뜻 보면 펜스 룰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고 남성이 무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평화적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가해남성-피해여성 간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저지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성이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펜스 룰은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려 그들을 직장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둘째, 동등한 직원으로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을 귀찮은 존재, 위험한 존재, 자기주장만 일삼는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고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통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 강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 여성과 남성이 영원히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고, 직장에서도 같이 일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밖의 성 정체성을 지닌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로 살 궁리를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함께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3. 펜스 룰이 힘을 얻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룰이 힘을 얻는 이유는 남성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공정함을 잃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가 무력화되었다고 느끼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의 실제 성범죄 무고사건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펜스 룰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 대결적 분위기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상호 노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의도치 않은 공범

남성적 조직문화에 모든 남성이 동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남성들의 술자리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SNS 대화 중에도 남성 중심주의적인 발언들이 쏟아집니다. 가끔 성폭력적 요소가 있을 때에도 정색하는 사람이 될까봐, 남성적 문화 안에서 본인만 이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거절을 못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공범이 되기보다는 다소 불편한 사람이 되더라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과거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이제는 성희롱 언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오늘 예뻐보이네요”라는 말도 예전에는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발언 하나에도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

〈경향신문 2018. 03. 08 기사/ 김지혜 기자〉

“여성 자체를 피한다” 미투 대응 ‘펜스 룰’, 또 다른 차별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성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피하는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이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직장 생활 등에서 성폭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예 여성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자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를 조심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성폭력을 유발하는 남성 중심적인 위계 질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성에 대한 차별만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9)는 8일 “최근 남자 직원들 사이에 ‘미투 조 심하자’며 여직원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 이후 이 은행에서는 남녀 직원이 함께하는 회식 대부분이 취소됐다. 남성 상사들은 여성 부하 직원과 대면하는 대신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

서울 소재 대기업에 다니는 ㄱ씨(30)는 “남성 임원들이 파견직 여직원에게 ‘미투 때문에 함께 술은 못하겠다’고 말한다”며 “회식 때 자주 가던 노래방도 금기문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펜스 룰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펜스 룰이란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용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직원에게) 지시나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로 한다” “웬만하면 여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등 펜스 룰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게시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이 같은 펜스 룰이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한다. 여성 직장인 박모씨(33)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부장님이 전과 달리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걸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최모씨(27)는 “임원 급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과의 업무상 교류가 차단 된다면 여성 직원들은 불이익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펜스 룰이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폭력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윤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유발하기 때문이며, 성폭력 피해 고발은 예민한 여성들의 과도한 반응인 경우가 많다”는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 펜스 룰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펜스 룰은 성폭력을 막는 조치가 아니라 남성들이 성폭력 가해자로서 고 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방어기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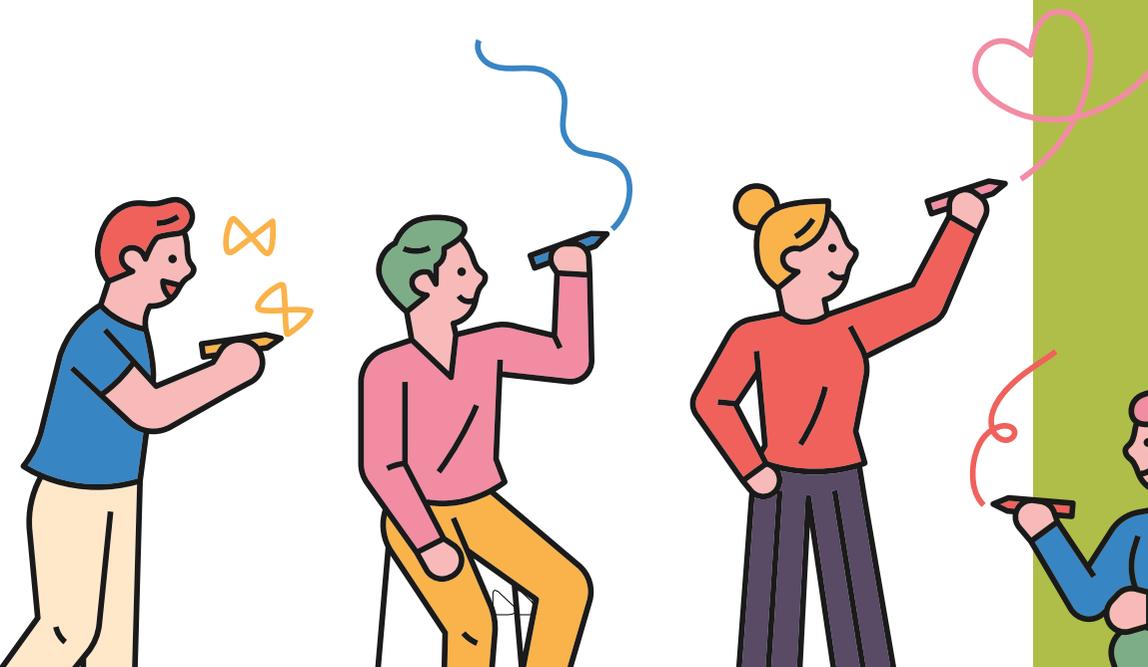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보니 펜스 룰을 미투 운동에 대한 반대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지킨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부제를 단 ‘펜스 룰’이라는 만화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연애 상대인 여성과 매번 ‘스킨십 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남성이 허위로

성폭력 고발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펜스 룰은 남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투의 물결 속에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을 따돌리고 조롱하는 운동”이라면서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상호 소통적으로 만들려는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081700001#csid_xea429fa1fdb2f1db320a92b114de48d





조직 문화 안에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차별

2-2

내가 해봐서 아는데...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장애인협회에서 일하게 된 나○○ 활동가. 새 직장의 업무는 예전 시민단체에서 하던 일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활동도, 센터 내 업무도 모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활동가도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가지며 의욕적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이 되면 나○○ 활동가는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 활동가가 발언을 하면 뭔가 시큰둥한 반응의 기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활동가가 담당할 하반기 회원 대상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일정과 강사를 정하는 회의였습니다. 나○○ 활동가는 K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일전에 몇 번 들어봤는데 알찬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던 강사라 이번 캠프에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장은 기존에 있던 강사도 반응이 좋으니 그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강사가 잘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세 명의 강사가 필요했는데 모두가 팀장과 소장이 추천하는 강사에게 의뢰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 활동가는 자신이 교육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묘한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활동가가 신입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팀장에게 왜 자신의 의견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내가 그 일은 해봐서 알잖아요. 괜히 문제 생기면 나○○님이 힘들어질까 봐 그러지요. 정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해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음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해 온 방식이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이런 사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해온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다 보니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나○○ 활동가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활동가가 처한 상황은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2. 조직 내 발언의 힘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에 타당성이 힘을 발하는 의사 결정의 중요성

3. 실천방안 ▶▶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1. 조직문화란?

어느 조직이든 그 안에는 그 조직만의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과 관습, 규범과 전통, 기술과 지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과 조직체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참여 활동을 중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절차와 규칙 중시할 것이며, 능률과 생산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목표와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그 조직이 가진 문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직 문화는 이미 익숙해진 어떤 분위기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웬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문화가 어떤지는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과정이 인권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 역시 그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2. 수평적 조직문화

‘수평적 조직문화’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란 두 사람이 사이에서도 고르게 나뉘지 않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에 따라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조직에 여러 파트의 책임자가 있다고 할 때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만일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진다면 권한마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러한 문화는 일을 대하는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 활동가는 자신의 일에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존중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책임감은 물론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는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A라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에 대한 책임과 성과가 조직의 수장인 최고 권력자에게 간다면 그 조직은 ‘위계 중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에 대한 책임과 성과가 그 일을 맡은 담당자에게 주어진다면 ‘역할 중심’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존중’과 ‘선택’은 다른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의견을 낸 사람이 실망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견이 ‘선택’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기 위한 회의에 A방법과 B방법에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모든 방법에

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방법 중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 C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포함될 것이고, 그 의견을 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온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책임질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자신의 의견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 사항을 수용하고 실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조직의 문화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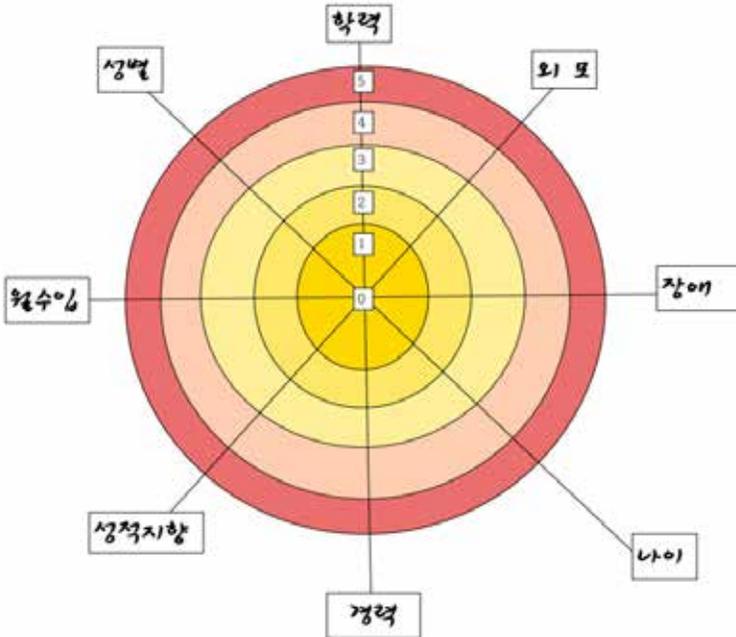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권력의 팔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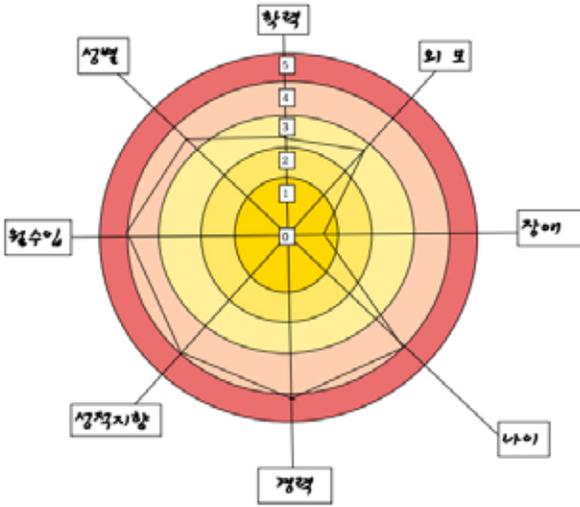
조직 안에서 나의 권력은 어떤지 팔각형을 그려봄으로써 우리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1. 다음 권력도에 자신의 권력을 체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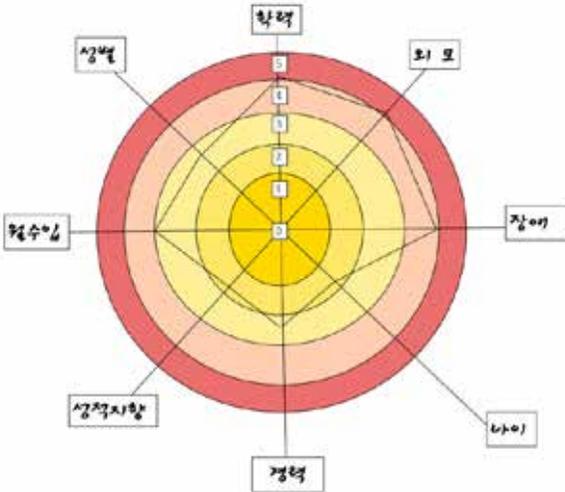
- ① 원 바깥에 있는 여덟 가지 항목에 각각 1부터 5까지 나의 권력지수에 점을 찍습니다.
- ② 권력의 정도는 가장 낮다고 생각하면 1,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 5입니다.
- ③ 권력의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 ④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것이 권력 정도 5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⑤ 장애 역시 장애 유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장애로 인한 권력의 어느 정도인가를 기입합니다.



II. 8개 항목에 기입을 하고 나면 각 점을 이어 8각형을 만듭니다.



A : 34세 남성 김○○



B : 54세 여성 박△△

Ⅲ. 각 개인이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8각형만 보고는 각 도형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나 장애, 학력 등으로 권력을 갖는지 아니면 위축되는지 여부는 그 조직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Ⅳ. 팔각형 A의 주인공이 중졸이고 B가 대졸이라면 이 조직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Ⅴ. A가 남성이고 B가 여성이라면, 이 조직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Ⅵ. 토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를 점검해 봅니다. 혹시 부정적인 부분이 거론되었을 때, 이를 보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면 많은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갖게 될 가능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Ⅶ. 더 나아가, ‘인식하지 못한 특권은 타인과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가 당한 차별과 내가 가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조직 문화 안에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차별

2-3

내 나이가 벼슬인가,
잘못인가?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김 국장: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센터에서 말단으로 일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여름: 이전 근무지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데 나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 국장: 회계팀장보다 나이가...

강여름: (속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소장: 어쩌면 나이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휴~ 난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려워. 너무 자기만 안다니까요.

(직원 회의시간에)

나 소장: 기관 재정이 매우 어려운 거 아시지요? 고민 끝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다 함께 근무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을 지속하자니 모두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김 국장: 근무 인원을 줄여야 하나요?

나 소장: 그래서 말인데... 나이 50대 여성분들이 먼저 후배들을 위해 거취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동료지원가 전문가 양성과정 훈련을 받을 인원이 정해졌나요?

김 국장: 그런데 업무가 많아 양성과정 훈련을 받으려면 업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나 소장: 지역사업팀 오팀장은 퇴직을 앞뒀으니 동료지원가 전문가 양성과정훈련을 받을 필요 없지 않아요?

(퇴근길에)

박생기: 김 국장은 내가 쓴 사업계획서 자기가 쓴 것처럼 부분 수정해서 소장님에게 보고하고도 나한테는 말도 없어요. 서운해서 한마디 했어요.

김초록: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리 분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김 국장이 뭐래요?

박생기: 나이도 어린 게 사사건건 할 말 다한다고. 오히려 뭐라 하네요.
김초록: 할... 나이가 벼슬이야 뭐야?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위의 사례에서 어떤 차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2. 차별 요소를 제거하면서 대화를 나눌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더 고민해 볼 내용

새파랗게 젊은 것과 고집불통 노인네가 모두 당하는 나이 차별

16세 100명과 76세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당연히 저마다 처한 삶의 환경이 다르니 나이가 같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6세면 청소년이라는 집단적 특성에, 76세면 쇠약하고 낡은 생각을 가진 노인이라는 편견 속에서 각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연령차별은 집단 간 억압, 소외, 불평등을 증폭시키면서 전 세대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한 발언이나 선은 세대를 막론하고 넘나드는 차별이기에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김 국장: 나이가 많으신데... 회사에서 말단직원으로 일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 나이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적 질문이나 발언

나 소장: 그래서 말인데... 나이 50대 여성분들이 먼저 후배들을 위해 거취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 기업 구조조정 시 직무능력이나 성과 등의 요소들과 상관없이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우선 해고하는 경우

나 소장: 지역사업팀 오팀장은 퇴직을 앞뒀으니 동료지원가 전문가 양성과정 훈련을 받을 필요 없지 않아요?

☞ **직무 능력 개발의 중요 수단이자 인사 및 보상에서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나이에 대한 차별입니다. 실제로 나이 차별은 고용에 의한 차별, 성차별 등 교차적 차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들은 조직문화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조직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나 문화였다면 과연 이와 같은 발언이 가능했을까요? 나소장은 어떠한가요? 기관 재정의 어려움을 구조 조정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연령차별을 거침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차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이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몇 년 전 모 기관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차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0%도 안 되었는데, 차별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90%를 넘었습니다. 차별했다는 사람은 없는데 차별받았다는 사람은 매우 많다는 이상한 결과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차별을 의도한 것이 아니거나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90%의 사람이 차별받았다면 차별적 행동을 한 사람이 나일 확률은 높습니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차별로 누군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나의 개별적인 경험과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낸다면 사회적 이슈를 공적인 의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편견, 억압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연령차별이란?

나이에 따라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령차별ageism, 개인적 선호, 사회적 편리의 결과로서 또는 다른 욕구나 생활주기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빈민촌gray ghetto, 공립 초등학교, 강제퇴직 프로그램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사회가 이러한 차별을 없애려 할 때 강도 높은 연령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령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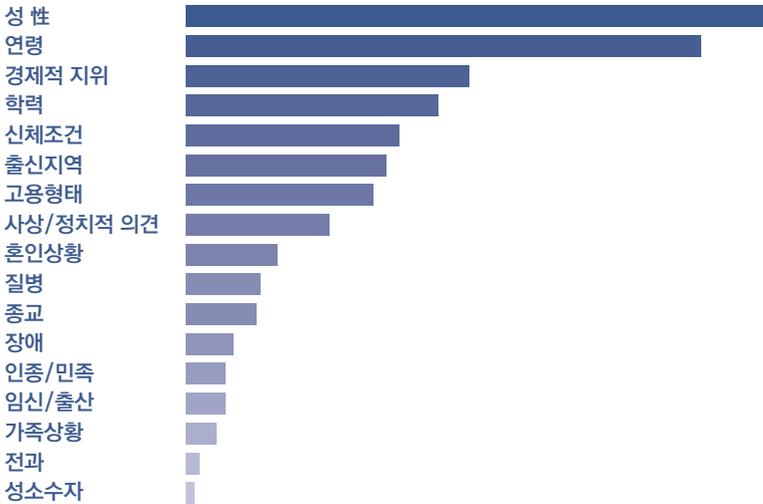
나이주의'Ageism, 에이지즘 즉 연령차별은 특정 연령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일컫는다. 위키백과

나이주의라는 개념은 애초에 노인에 대한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청소년어린 존재를 향한 차별만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나이주의는 다른 가면을 쓰고 차별을 유발시킨다. 남성의 나이들이 경험과 연륜의 증거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의 나이들은 '시들어버린 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늘 '어린 애' 취급을 받곤 한다. '그 나이 때는 ○○을 해야 정상이지'라고 명령을 해대는 고정된 생애 주기는 사실 모든 연령대를 구속하는 힘이 되곤 한다. 더불어 나이주의의 친구들이라고 부를 만한 유사한 주의-ism들도 많이 있다. 청소년을 향한 나이주의와 관련해서 권위주의, 보호주의, 경험주의연장자의 경험, 연륜을 절대시하는 것, 능력주의 등은 늘 함께 작동해 나이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인다. 인권교육, 날다, 허깨비 같은 나이주의, 개념으로 잡아낸다. 한날. 2016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연령차별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외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가의 문제다. 연령차별은 권력을 손에 쥔 집단이 자기들보다 훨씬 어리거나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침묵시키거나 단순히 무시하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대신에, 우리의 외형을 보고 무언가그것이 일이든, 관계든, 머리 모양이든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억측한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연령차별이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지레 짐작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밀레니얼 세대를 두고 게으르다고 꾸짖하거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연령차별은 양날의 칼이다.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애슈턴 애플화이트. 2016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으셨나요?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위의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성별 다음으로 높은 것이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어떤 차별보다 놀라운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은 누구나 겪고 있으며 반드시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차별, 나이가 적다고 차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속한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기를 바란다면, 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료집]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도서]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애슈턴 애플화이트. 2016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1.

통합교육

장애인학생인

저도

캠프에 가고 싶어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는 음성 언어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힘들고,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따르는 것에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끼리 텐트도 치고, 물놀이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도 하는 재미있는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의 학생인 만큼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모둠활동을 하면서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선생님들이 밤 시간에 잘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한 결과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할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캠프 일정을 듣자마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에게서 우리 아이는 캠프에 참석하지 말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과 불을 가까이에 하는 것이 우려되고, 야외 활동이다 보니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실종 사건 등도 걱정된다 하였습니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특수학급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특별 지시로 예산을 두 배 들여서 깔끔한 숙소에서 머무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아쿠아리움과 전망대를 다녀오는 체험 학습도 다녀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실망할 것이 뻔합니다.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입장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속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일까요?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이 통합교육일까요?

각자에게 더 좋은 교육방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통합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2. 사례의 장애학생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3. 장애학생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부모, 교사, 비장애학생 입장에서 각각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3. 더 고민해 볼 내용

1. 일부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 13조 4항〉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차법과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장애학생을 학교의 행사에서 참여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친구들이 가는 캠프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분리, 배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 사례에서 나온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현장 학습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참여를 전제로 한 완충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 사례와 같이 배제와 차별의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회가 그 예입니다.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100여 년을 이어져 온 행사입니다.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박도 터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은 달리기도, 줄다리기도, 박도 터뜨리지 못합니다. 그저 운동장 한켠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100여 년간 차별받아 온 것입니다.

정말 비장애·장애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할 생각을 못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행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다른 사례들을 조사하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2. 교사 독박 구조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사 1인이 비장애·장애 학생을 모두 살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사회복지무원 등 지원인력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장애학생과 캠프에 함께 함으로써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학교 측에서 몰라서 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에서 장애학생을 데리고 갔을 때 신경써야 할 일이 많고 혹시라도 일어날 안전사고가 걱정 되니 분리 진행하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지원 방법을 확충하여 장애학생도 '당연히' 안전하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 인력인 특수교사가 반마다 배치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래 자원봉사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이 돕는 동료 자원봉사 정책이 있습니다. 장애·비장애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장애학생의 적응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봉사 시간도 책정해주고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역할을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로 고정함으로써 위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장애학생의 선한 마음을 장애학생의 지원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잘 도와주니 학년이 바뀌어도 둘을 짝지어 주는 것입니다. 비장애학생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도 말도 못한 채 그냥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와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비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

통합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차별이라는 저항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장애학생 때문에 비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입장에서도 교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학교가 ‘학습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전제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습만을 위해서라면 사설학원 교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곳입니다. 장애인을 영원히 배제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00% 준비된 통합교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통합교육 관련 자료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7).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가이드북 I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7).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가이드북 II
교육부(2015).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무장애 학교 조성매뉴얼

신문 기사

중학교 교감이 장애학생 분리교육, 특수학급 예산 삭감 주장 장애계 “해당 교감의 징계와 특수교육 배제 재발방지 나서라” 촉구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분리교육을 주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장애계가 해당 교감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7월 7일 자 경향신문 <‘시설 좋은 특수학급은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장애인 차별 발언한 교감>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구구의 ㄱ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은 특수교사에게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해 이런 것까지 사야 하느냐”는 말을 하며 결재를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감의 지시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인 교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올해 2월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해 통합교육을 지향함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ㄱ중학교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교육권연대의 주장이다.

교육권연대는 “이미 동아리 분리교육에 대해 인천동부교육청에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지

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며 “장애학생인권지원단과 통합교육지원단 파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ㄱ 중학교의 경우 올해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곳이기에 공사 진행과 첫 발령된 특수교사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에 맡겨버림으로써 교감의 갑질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에도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여름에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권연대는 “당시에도 교장의 장애인차별이 명백함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며 “여론에 떠밀려 교장을 파면했지만 ㄱ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사건을 덮는 지역교육청, 장애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특수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대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ㄱ 중학교를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가해자인 교감과 특수학급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해당 교감의 직무 배제 후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동부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단과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마이너(beminor.com) 2020.07.14. / 허현덕 기자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2.

노동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타당한가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김노동¹⁾이라고 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보호 작업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하는 일은 A4용지 포장입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 직장은 나이 마흔에 얻게 된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그 동안에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직업 박람회 등도 찾아가 봤지만 중증자폐성장애인이란 이유로 저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수급자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내가 받는 월급이 적어도 너무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1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 했습니다. 왜 내 월급은 15만원밖에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식대까지 떼고 나면 13만 8천원²⁾만 주는지 따졌습니다. 원장님은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 훈련생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생은 나중에 비장애인처럼 일을 잘하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이며, 지금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이라 아예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왜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지내야 합니까? 왜 최저임금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1)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시리어 화자로 설정함. 노동의 주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

2) <http://www.newspolekr/news/articleView.html?idxno=5812>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 # 최저임금 적용을 모두에게 하면 오히려 고용이 어렵게 되나요?

2. 직업 재활의 측면에서 보호작업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당장 취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호작업장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 훈련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보호작업장과 같은 복지시설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3. 더 고민해 볼 내용

1.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

〈최저임금법 제7조〉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가치 생산을 전제로 주는 금액이라는 전제입니다.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적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매일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잠 잘 곳이 필요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고, 출퇴근을 하기 위한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금으로 충당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성과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준은 기존의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기준이어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인구집단이 장애인밖에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그룹이든지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비장애 남성, 청년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을 꼭 짚어 '노동능력 없음'을 전제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비장애인의 노동환경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며, 종종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동자라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은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의 기존의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더 많이 개발하여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권리의 측면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2. 복지 vs 노동

기존의 직업재활 영역에서 보호직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의 경험을 제공하고 훈련까지 겸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직무를 개발하고, 판로를 넓히는 과정이 어려워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고 부족분은 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훈련생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노동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히 그들은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권익옹호 활동과 노동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권리중심 복지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중증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가 그것입니다. 이 일자리의 직무는 크게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권익옹호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예전의 관제 데모를 떠올리게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능력의 위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간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활동가들도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사회운동을 ‘일’로 합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독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증장애인의 몸과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약간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기보다 장애인 노동권을 더 확장하고 보장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권 관련 자료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국가인권위원회(2015).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2018)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3.

자기결정권

굳이

말려야 할까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용인은 뇌병변장애인이며 연령은 50대입니다. 나와 마음도 잘 맞고, 신체적 활동지원 이외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용인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측정하는데 최근 들어 그 수치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약도 잘 듣지 않아 인슐린 주사로 바꿨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볼 때마다 나를 쳐다보며 이용인의 혈당 관리를 잘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용인은 몸이 이렇게나 안 좋은데도 커피믹스를 하루에 5개~10개 정도 먹습니다. 커피믹스 1개에는 하루 설탕 권장량의 25%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믹스만으로도 하루 권장량 2배의 설탕을 먹는 것이지요. 당뇨 환자한테 카페인도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인에게는 특히 커피믹스가 그러하지요.

걱정되는 마음에 커피믹스를 숨겨놓고는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사오라고 하시길래 커피믹스는 몸에 좋지 않으니 그만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커피믹스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용인의 건강이 걱정되어 사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듯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을 활동지원사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인권도 좋고, 자기결정권도 좋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1. 활동지원사의 결정과 행동은 이용인에게 어느 선까지 유효할까요?

- #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용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 # 활동지원사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까요?
- # 이용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활동지원사의 역할 아닐까요?

2.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 권리인가요?

- # 자기결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일까요?
- # 자기결정권이 유효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3. 더 고민해 볼 내용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7조〉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은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비단 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쉬워 보이는 원칙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참 힘든 싸움입니다. 부모가, 사회복지사가, 의사가 장애인의 의견을 대신합니다. 전문가는 맞고, 장애인은 틀리다는 입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버린 탓입니다.

이에 대해 김도현¹⁾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능력’은 서로 연동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¹⁾ 다시말해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능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²⁾ 자기결정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결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이 자기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위 사례에서 활동지원사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인의 결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건 네 생각이요”라고 이용인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100%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중에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설령 이용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용인의 판단과 행동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결정권의 예외적 사항인 자해와 타해의 위험에서 자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활동지원사는 커피믹스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드리고, 최대한 안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1) “능력과 권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권리는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때에만 온전히 권리일 수 있다. 인간은 다 다르며, 어떤 활동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 다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해당 활동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로 인해 권리의 실현을 제한받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략) 자기결정능력이 낮다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결정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 양성 교육과정에서 발췌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활동지원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¹⁾

- 장애인의 관심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듣기
- 장애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원방법을 질문하기
- 장애인의 의견을 지원과정에서 반영하기
- 장애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당사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기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표정, 몸짓, 행동 의미를 파악하기
-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 장애인에게 강요하거나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기

활동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기결정 관련 상황²⁾

▲ 장애인의 결정이 당사자에게 심각할 수 있는 경우

- 결정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 결정으로 예상되는 장점을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결정으로 예상되는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어떤 상황이든 결정의 주체는 당사자임을 알려준다.
- 이후에는 어떤 결정이든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이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 결정의 주체는 반드시 당사자여야 함을 먼저 알려준다.
-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 결정시점, 결정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차이점 등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를 장애인에게 질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 소극적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1)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 양성 교육과정에서 발췌

2)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 양성 교육과정에서 발췌

▲ 자기결정을 내세우며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영역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 만약 활동보조 서비스의 범위가 아니라면, 이 상황을 장애인에게 설명한다.
-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통해 확인시킨다.
- 지원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고 알려준다.

▲ 장애인이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

-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순전히 서비스 제공자의 생각일 수 있다.
- 장애인의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생각되어 제공자가 대신하거나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결정 권한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한 한해서 개입해야 한다.

활동지원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16).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과정.
정경미(2013). 활보활보. 북드라망.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65세가 되면

비장애인이 되나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로 65세를 맞는 중증장애인 손○○ 씨는 다가올 생일이 영 반갑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노인요양서비스로 바뀌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세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지체 장애를 갖게 된 손○○ 씨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손○○ 씨는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가족들은 손○○ 씨를 정성스럽게 돌봤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제 각각 삶을 살아가면서 손○○ 씨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벗 삼아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손○○ 씨의 생활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장애인 야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십자수와 목공예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배우고 참여하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를 하고 각자의 삶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현재 손○○ 씨는 한 달에 49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야학에도 나가고 집회에도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생일이 지나면 하루 10시간 쓰던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하루 4시간의 노인요양서비스로 바뀐다고 하니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바뀌면 이제 다시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켜 놓고 창밖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한숨만 납니다.

2. 핵심 이슈

1.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연령제한에는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을까요?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연령제한 규정에 드러난 차별적 요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손○○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집에만 있거나 시설에 갇혀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가 되어 더 이상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노인장기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기노인요양 서비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책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활동보조 제도가 있는 건데 국가에서는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제

한을 뒀다는 것은 국가의 장애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신문기사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뚝, ‘하루 14시간→4시간’ 장기요양으로 살아가는 김순옥 씨

“시설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시설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반복하는 김순옥만 65세 씨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의 오른쪽 눈에서는 실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두 달째 잠도 이루지 못했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며 활동지원사 성태분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김씨에게 보냈다.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김씨는 손가락 한 개로 휴대폰을 터치할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7월 7일이 생일인 그는, 지난 8월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로 인해 전에는 월 411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월 120시간의 노인요양 급여를 받게 됐다.

하루에 14시간이었던 서비스가 10시간이 깎여 4시간으로 줄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세 끼 중 아침밥만 먹을 수 있고, 같은 기저귀를 17시간 동안 착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 방문턱을 넘을 수 없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일 저녁,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축구 농성장에서 하루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인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 씨는 거주지인 부산에서 당일 새벽 6시에 출발해 서울 농성장까지 두리발부산 장애인을 택시과 KTX, 지하철을 이용해 먼 길을 달려왔다. 단식 농성까지 동참한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그럼에도 내내 “시설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도와 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혼자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으시죠?’

김 씨의 비극은 6월 21일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은 ‘김 씨가 만 65세가 되니, 노인요양을 신청하라’고 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없다’는 답변이 왔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말에 김 씨는 체념하고 24일 노인요양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6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실사를 나왔다.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활동가에 따르면, 건보공단 조사원은 방문하자마자 김 씨를 아래위로 쪽 훑어본 후에 ‘이분은 1등급이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인요양 인정조사표 상의 질문은 한 개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사원은 그저 김 씨의 신체적 조건을 보고 이미 판단을 끝낸 듯했다고 당시 김 씨와 함께 있던 활동가는 기억했다. 그가 항의하자 조사원은 그제야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질문과 답이 일대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신체기능^{ADL}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에 대해서 각각 가능여부를 묻고, 이에 세부적으로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등 정도까지 직접 묻고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원은 ‘혼자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으시죠?’라는 방식으로 질문했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김 씨에게 인지능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더하기 빼기, 날짜 등 단순한 질문이었다. 제대로 답변을 했지만, 조사원은 ‘아무것도 못 하기에 1등급’이라고 재차 확인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조사원은 김 씨에게 ‘시설에 있지 뭐하러 나왔냐?’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만 65세가 되더라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단 한 가지다. ‘노인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지침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저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만 존재한다. 그렇게 30분간의 조사로 김 씨의 운명은 바뀌었다.

김 씨는 7월 3일 건보공단에 찾아가 사정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던 건보공단은 2시간쯤 흘러서야 ‘심사 유예’라는 게 있다고 알려줬다. 수급심사위원회가 7월에는 4일, 11일에 열리고 8월에는 8일, 14일에 열린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김씨는 가장 기간이

긴 8월 14일까지 심사 유예를 신청했다.

그리고 8월 14일 건보공단은 김씨가 요양보험 1등급을 받았음을 최종 공지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5세가 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7월에 만 65세가 됐다면 8월 말일까지다. 그러나 그 사이 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은 바로 중단된다. 사실상 김씨의 활동지원은 끝났다. 이날 서울 농성장에 함께 온 활동지원사는 김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동행한 것이었다.

시설이 싫어서 탈시설 했는데, 65세 됐으니 다시 시설로 돌아가라?

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에 의해 울산 울주군에 있는 동연요양원에 입소했다. 시설에 있는 동안 형제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김씨는 25년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016년 6월 탈시설했다. 당시 60세였던 김씨는 ‘그 나이에 나가서 뭐 하냐’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시설 밖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탈시설 직후에는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2년간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6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이야기 중에 집 이야기가 나오자 김씨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을 당시의 벅찬 감정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잠시뿐이었다. 다시 그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침뚫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탈시설 후 4년간 중증장애인권익옹호 활동, 탈시설 멘토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지난 2018년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선정하는 ‘2018 자립왕’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씨는 “모든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나처럼 시설에서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만큼 그에게 자립생활은 즐거움 자체였다. 제주도로, 남이섬으로, 담양으로, 속초로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다. 올해 초에는 해외여행도 준비했다. 여권 사진도 찍었다. 김씨가 외출하고 싶을 때는 외출하고 전국을 누비고, 해외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411시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시간이 급격히 삭감되면서 모든 게 꿈같은 이야기가 됐다.

턱없이 적은 서비스 시간은 시설에 살지 않아도 김씨가 있는 모든 곳이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뿌듯해했던 아파트조차 작은 시설이 되어 김씨를 옥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방문턱조차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은 시설로 돌아가든가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김씨는 잠을 못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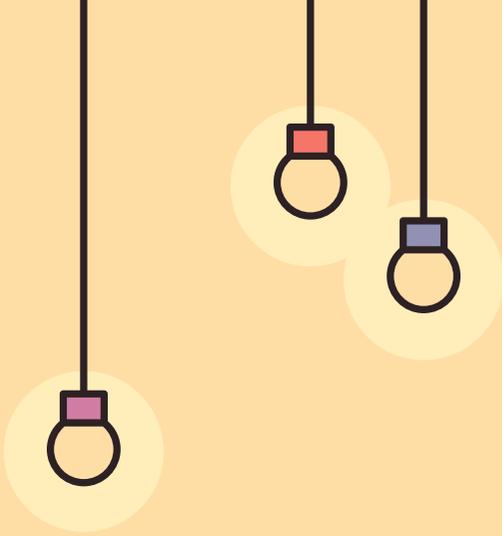
연금공단, 건보공단, 구청을 찾아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항의도 하고 읍소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럼 시설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이었다. 기관에서는 ‘제도상,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을 펼친다면 정부는 65세 이후 자립생활을 철저히 막으며 교묘하게 시설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김씨는 “바깥 외출은커녕 시설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지었다.

김씨는 노인요양 자격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만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부당한 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에 맞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65세가 되면 노인성질환으로 분류하는 비상식적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다.

김씨는 그때까지 곳곳이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죽어도 시설에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요.”

비마이너 20190822 / 허현덕 기자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5.

장애 유형간 차별

장애인끼리

왜 차별하나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송○○ 씨는 아들 김○○ 씨와 함께 주간보호센터에 갈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센터에는 지체장애인 남성 세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아들은 장애 특성상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신발을 벗기기도 하고, 신발 벗은 사람을 보면 무턱대고 발을 만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미 그런 특성을 알고 있는 이용자나 직원들은 좋은 말로 아들의 손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크게 저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휠체어는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다가가 신발을 벗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송○○ 씨가 달려가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남성들은 아들을 파리채로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며 멀리 쫓아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이 분들은 성년인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아이 대하듯이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 중 어떤 사람은 아들이 먼발치에 보이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늘 죄인처럼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 부모가 센터에서까지 이런 상황에 접하는 게 너무도 속상합니다. 장애 특성상 하는 행동에 대해 좋은 말로 거절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신경을 건드릴까 싶어 딱히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폐성 장애인 김○○ 씨가 겪은 일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 차별이라면 어떤 차별에 해당할까요?

사회적 약자 사이의 차별과 혐오는 왜 일어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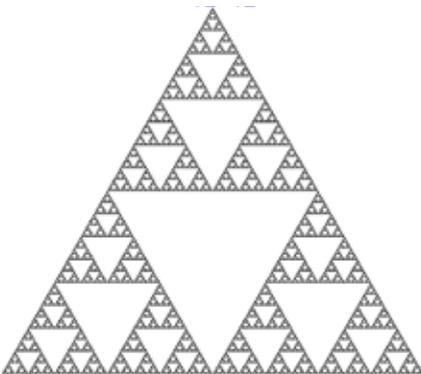
- 내가 당한 차별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 나는 사회적 약자이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 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차별이 아닐까요?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인권적 이해란 무엇일까요?

-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가능할까요?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1. 차별의 프랙탈



프랙탈(Fractal)이라는 다소 낯선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수학이나 기하학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도형의 일부를 확대해 봤을 때 그 도형의 전체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림과 같은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Sierpinski Triangle)입니다.

이런 프랙탈 구조는 수학이나 기하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의 구조나 나뭇가지,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브로콜리나 눈결정, 고사리 잎 등이 그렇습니다. 브로콜리의 작은 가지를 떼어보면 그 안에 똑같은 구조의 브로콜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프랙탈 구조_ 브로콜리, 눈결정, 고사리

우리가 말하는 차별 역시 이 프랙탈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에서 차별받는 하위 집단이 있다면 그 하위 집단 안에서도 또 차별받는 더 작은 집단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는 집단이라면, 과연 장애인 집단 안에서는 차별과 혐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도 또 권력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차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의 모양새가 유사하게 순환되는 구조를 ‘차별의 프랙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송○○ 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장애인 사회에서 또 차별받는 상황에 더욱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아들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식당 등을 다니다보면 늘 주눅 들고 마음 졸이게 되는데,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같은 처지인 장애인까지 아들에게 막 대하는 걸 보아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의 프랙탈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원래 그런 것이니 당연한 것으로 보아 넘겨야 할까요?

2. 내 안의 차별의식 돌아보기

내가 받는 차별이 정말로 싫고 다른 사람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차별의 프랙탈 구조를 타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절대 권

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역시 원래 있었다거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법이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가를 보면, 장애인의 권익이 그나마 이 정도 향상된 것 역시 기존의 질서에 대해 저항하고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송○○ 씨는 ‘같은 장애인끼리 이해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정해지기 보다는 장애인권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송○○ 씨의 이런 생각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참아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이 더욱 중시된다면 폭력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김○○ 씨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구조에서의 차별이라고 해서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차별의식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차별의 프랙탈’은 그 견고한 틀이 깨어지고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3. 연대의 가치 확인하기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더욱더 안 보이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나와 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목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많아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종, 나이, 성적지향,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나이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모은다면, 더 큰 힘으로 차별에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대는 상호 결속과 소속감, 도움을 의미한다. 연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자와 약자 사이, 세대 사이, 서로 다른 국민 사이에 해당된다. 연대는 변화의 힘을 만든다. 이것은 노동 운동의 경험이다. 연대가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타인을 돕고자하며, 공동의 규칙과 조직을 통해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장되고 조직된 연대로서 복지 국가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연대는 우리 사회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 강령 중에서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인권의 상호교차성 Intersectionality

상호교차성 또는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은 사회적 정체성 및 이와 관련된 억압, 지배구조, 차별이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페미니스트 법학자 김벌리 크렌쇼 Kimberlé Crenshaw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작용하는 억압, 지배구조, 차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크렌쇼는 이 이론을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교차로 intersection를 떠올려보자. 차가 네 방향에서 모두 오고 가는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별은 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온 차로든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 방향에서 온 자동차에 동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차점에서 있는 흑인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이 피해는 성차별 수도 있고 인종 차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흑인 여성은 때로 백인 여성과 유사한 차별을 경험하고, 때로는 흑인 남성과 유사할 차별을 겪는다. 또 한편으로는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이 결합된 형태의 이중적 차별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흑인 여성은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합이 아닌, 흑인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겪기도 한다.

-김벌리 윌리엄즈 크렌쇼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6.

장애인 예술

‘장애인 예술’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장인 송 과장의 회사에서는 매주 둘째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 오후에는 직원들이 다함께 공연이나 영화 관람 등을 통해 문화도 즐기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집니다. 평소 장애인 단체에 후원을 해 오던 송 과장은 장애여성 공감의 ‘춤추는 허리’ 공연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좋다고 했습니다. 공연도 보고 장애인도 돕는 일이라면 박수를 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불만 폭주 라디오’. 라디오 DJ가 사연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서른 즈음에> <성공한 여자의 하루> <예술가입니까?>라는 세 이야기를 옴니버스 식으로 진행하면서, 장애 여성의 일상과 문제의식을 잘 다룬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관람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에서 동료들은 공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참 열심히 하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무대에 서지? 용기가 가상해.”

“DJ를 맡은 사람의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장애인치고는 잘 하잖아.”

공연을 추천한 송 과장은 이런 반응에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공연이 혹시 별로였나요?”

그러자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네요. 이럴 때 좋은 일도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송 과장님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네요.”

동료들의 공연 후기는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배우들의 ‘장애’에 머물러 있어 보였습니다. 송 과장은 뭔가 씁쓸한 느낌을 받으며 다음에도 이런 공연을 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장애인의 예술 작품을 비장애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음정을 잘 맞추지 못한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펜을 잘 칠 수가 없다면, 춤추는 사람이 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

장애인이 생산한 작품은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 결핍인가 개성인가?
- 장애인 예술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이유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1. 장애인 예술은 '예술'로서 뭔가 부족할까요?

불만 폭주 라디오의 세 번째 이야기, <예술가입니까?> 주인공 나예슬은 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당혹스럽습니다.



예술이기에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름, 2018년

“나예슬님은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예슬은 독백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멍하게... 멍하게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무대 위에 올랐던 나의 공연들은... 예술이기에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결국 비장애인의 공연을 좀 더 그럴듯하게 흉내 내고, 결과가 어쨌든 시도만으로도 훌륭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표현하는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연만을 해 왔던 걸까요?”라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음, 2018년

“도대체 예술이란 뭘까요?”

극 중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이란 기술적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예술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술이란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예술은 한숨을 푹 쉽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보는 장애인 예술은 그저 가상한 노력으로면 평가받아야 할까요?

2. ‘쌘’이라는 이름의 남성 소변기가 예술 작품이 된 사연

‘춤추는 허리’ 공연 〈불만 폭주 라디오〉 내용 중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폭포’라는 이름의 요강이 등장합니다. 이는 뒤상의 ‘쌘’을 패러디한 것으로, 실제 남성 소변기가 예술작품으로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셀 뒤샹(Duchamp, 1887~1968)은 1917년 4월 뉴욕의 한 전시회에 ‘샘’ Fountain이라고 이름 붙인 남성 소변기를 출품했습니다. 자신의 가명인 ‘R. MUTT’라는 이름과 제작 연도인 ‘1917’이라는 글씨만을 썼을 뿐, 실제로 사용하던 소변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미술관의 위원회는 ‘원래 자리에서는 매우 유용한 물건일지 몰라도,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전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훗날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11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변기는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작가의 의도와 그 작품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이란, ‘위대한 정신과 영혼, 남다른 상상력을 지닌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무엇’이었습니다. 뒤샹은 예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 추한 것, 공장에서 만든 물건도 예술가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놓인 자리와 의미에 따라 얼마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뒤샹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정관념을 어떤 작품에 들이대는 것일까요? 어쩌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예술이라고 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거르지 않은 채 함부로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 <춤추는 허리> 공연이 장애인 예술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차별받고 억압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문제화’한 일련의 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이 하는 예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신체나 표현 능력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핍’의 요소를 확인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전제하고 평가한다면 ‘장애인 예술’은 그저 비장애인의 예술에 못 미치는, 그저 시혜 차원에서 봐 주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예술도 장애인의 창의적 자아표현이다. 그렇지만 장애 예술인은 사회적 접근성 부족하고 교육, 훈련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은 장애인의 삶과 보편적 인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서 사회에 그들을 알릴 수 있다. 장애인을 장애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장애인 예술은 도움이 된다. 장애 예

술인에게 창작 활동은 심리적인 지지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되며,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이며, 좋은 직업인 것이다.

〈한국 장애인 예술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병화, 장애인뉴스 2015. 4. 20

페미니즘 영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바라볼 수 있듯이 장애인 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예술을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예술을 보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기사] 〈예술, 인권, 정치의 팽팽한 긴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음. 2018년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7.

장애인 연금

나는 경증인가요?

중증인가요?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던 63세 박○○ 씨는 올해 초 뇌졸중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와 뇌병변 장애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몇 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그나마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대부분 쓰고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나마 박○○ 씨의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쥐서 너무 아플 때는 통증치료라도 받았는데, 지난 해 결혼하여 분가한 후에는 어쩌다 주는 용돈을 받는 것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할 때 부모라고 보태준 것도 없이 아들 혼자서 대출을 받아 번두리 전셋집을 겨우 얻었고, 갓 태어난 손주와 며느리 셋이서 뼈뺏한 살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 씨는 작은 집에서 아내와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냉동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아내는 수년째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이제는 일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을 안타깝게 본 이웃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를 해야 한다며 수급권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으나 중증장애장애1급, 장애2급, 중복지장애 3급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대상자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하루 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정부가 박○○ 씨에게 장애인연금을 주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나는 중증인가요? 경증인가요?
- 국가 예산의 절대적 부족 때문일까요?
- 등급에 따라 연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 가족은 언제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할까요?
- 부양의무자 기준, 무엇이 문제일까요?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OECD 평균의 1/4에 못 미치는 장애인복지 예산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인데, 예산에 맞춰서 의료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양을 조절하고 분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지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 우선 고려되지 않고 의료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사회이든 국가 예산을 분배할 기준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가치와 정책의 척도가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를 유지할 개인의 소득과 자산이 없음에도 의료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진정한 복지 국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장애인 분야 예산만 늘리는 건 불공정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부 예산을 조금만 살펴봐도 지나친 걱정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 위풍당당 11위입니다. 반면 아래의 통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61%로 OECD 평균 2.11%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윤화 외, 《2018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92쪽.

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예산 배분의 순위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처한 사람에게 기초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써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부양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만큼 있는 경우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전가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박○○ 씨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가진 돈도 병원비로 모두 쓴 상태에서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더욱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면 되는데 박○○ 씨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박○○ 씨에게는 급여를 받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아들도 자기 가정을 이루어 살기에 빠듯한 살림일 텐데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아들의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부모는 미안하고 죄인 된 마음으로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생계의 곤란을 가족의 책임으로 묻지 말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 여부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야 합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신체기능 여부 즉 의료적 진단에 따라 국가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등급을 1급~6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학적 등급 판정에 따른다는 것은 신체 부위를 조각내어 잔여 기능을 따져 묻고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며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사회 서비스의 필요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수	장애인복지법의 중증, 경증 구분	장애인연금법의 중증, 경증 구분
1급	중증	중증
2급		
3급 중복		
3급		나는 중증인가요? 경증인가요?
4급	경증	경증
5급		
6급		

그렇다면 장애인 연금은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1급~3급³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은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을 1급~3급까지로 보고 있으니 장애인연금도 1급~3급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1급~ 3급 중복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는 다른 별도의 중증장애인 규정을 두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의학적 기준만으로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의 수입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박○○ 씨처럼 뇌병변 3급인 경우와 3급 중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몸의 불편 정도가 다르다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의 차이가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그의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명백하다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기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낸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서는 ‘18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7%)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으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목적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에 있음에도, 박○○ 씨는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집]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소득보장 정책 토론회-장애인연금법 개편방향. 2020

[기사]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 <https://blog.naver.com/handicapinews>

[자료]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보건복지부. 2020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8.

탈시설

잘살고 있는 아이를
왜 꼬드겨서...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적, 지체 중복 장애가 있는 나당당 씨(가명, 39세)는 25년째 가족과 헤어져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의 ○○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걸어서 처음 시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가족과 이렇게 오래도록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자주 찾아온다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이지요. 처음 1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으나 점차 뜸해지더니 그 후 5년, 10년, 20년, 25년이 지나도록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했지만, 이는 도시 사람들이 어쩌다 여름 피서를 와서 한 말을 TV를 통해 들은 말이고, 실상은 산 속에 위치해 마을 사람들과 만나려면 40분은 걸어야 하는 외진 곳입니다. 하루종일 창밖을 봐도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집배원 아저씨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외진 곳에서 직원들이 짠 시간표에 따라 삼시 세 끼 식사하고, 불 끄면 잠자기를 반복하다 보니 신체 기능도 약해져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넘어져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는 벽 잡고 겨우 서서 다니다가 유일하게 식당을 갈 때 휠체어를 타고 잠시 숙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 인권교육을 온 활동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불편한지 등을 물었을 때 나당당 씨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일 년에 8시간씩이기는 했지만 인권 활동가를 만나면서 나당당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당당 씨는 시설이 아닌 어릴 때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명이 살고 있는 시설이 아닌, 가족과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사회복지사에게 수차례 하였으나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은 가족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할지 몰라 나당당 씨는 인권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당당 씨의 어머니는 인권단체에 찾아와서 '잘살고 있는 애를 왜 꼬드겨 분란을 일으키냐, 당신들이 모자라는 애를 책임질 거냐'며 다시는 나당당 씨를 만나지 못하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탈시설을 반대하는 이는 누구이고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보호와 안전 & 자유와 자기결정권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스스로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정서에 의해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돌봄을 제공해 왔던 가족이 해체되거나, 지역사회에 지원과 돌봄이 빈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 의해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보내져 왔습니다.

몇백 명에서 몇십명까지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운영원리가 관리와 보호와 안전으로 일관될 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보장되리라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최신식 시설로 꾸며져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990년대 소쩍새마을(1994), 예바다(1996), 장항 수심원(1997), 양지마을(1998), 2000년대 성람재단(2004), 석암재단(2008), 광주인화학교(2010), 인강원(2014), 인천해바라기(2015), 대구시립희망원(2016)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¹⁾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장애인 당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펄펄 흘렸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시설에서 주는 대로 먹고, 볼 끄면 자야 하는 생활 속에서 이런 자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아직도 시설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권리옹호활동을 하는 이유는 시설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해 자신이 느끼는 행복을 단 하루라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활동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이 시

1)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불법구금, 폭행 및 성폭행, 동의 없는 불임수술, 강제삭발 및 투약 등의 신체적 자유 침해, 외부와의 편지, 전화, 면회, 검열과 제한, 핸드폰 소지 제한 등의 통신의 자유 침해, 종교 강요, 종교 제한, 종교 집회 강제 동원, 개인 소지품 제한 등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열악한 의식주, 의료서비스의 부재, 정별목적으로 음식을 제공 제한 또는 금지, 살인, 영매장 등의 생존권의 침해, 수급액, 장애수당, 장려비 등 갈취, 신용도용에 의한 신용불량자문의 전락 등의 재산권 침해, 강제노동,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불 또는 소액 지불 등의 노동권 침해, 인턴소 결정권 제한, 일상에서의 자율제한 등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난방이 잘 되고, 예전처럼 한 방에 10명 이상씩 쪽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한방에 2~3명이 생활하고,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많아졌어도 그건 결국 시설일 뿐이라며,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탈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가별로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동기는 다르지만, 탈시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거주시설의 장애인의 삶 또는 인권상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변경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을 하였으며, 둘째, 탈시설을 위한 관련 법률이나 서비스 지원법을 제·개정하거나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거주시설 중심의 예산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시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지역사회 준비가 안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사람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거주의 자유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해진 곳에서 집단생활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부모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주인 중 비자발적 입소자가 67%,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58%에 달했습니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가 44.4%로 나왔습니다. 과연 거주시설의 이용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시설 운영의 기본 원리는 보호와 통제임을 생각할 때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에 국가 재원이 많이 보조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인권침해가 수시로 일어나는 복지 현장에 오히려 국가권력이 발동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정보 접근권

나당당 씨의 어머니는 25년 전 남편이 아들의 장애를 한탄하며 떠나버린 후, 혼자 힘으로 일하며 나당당 씨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나당당 씨를 시설에 넣었습니다.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던 때와는 달리 사회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했다면 나당당 씨는 더 일찍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가 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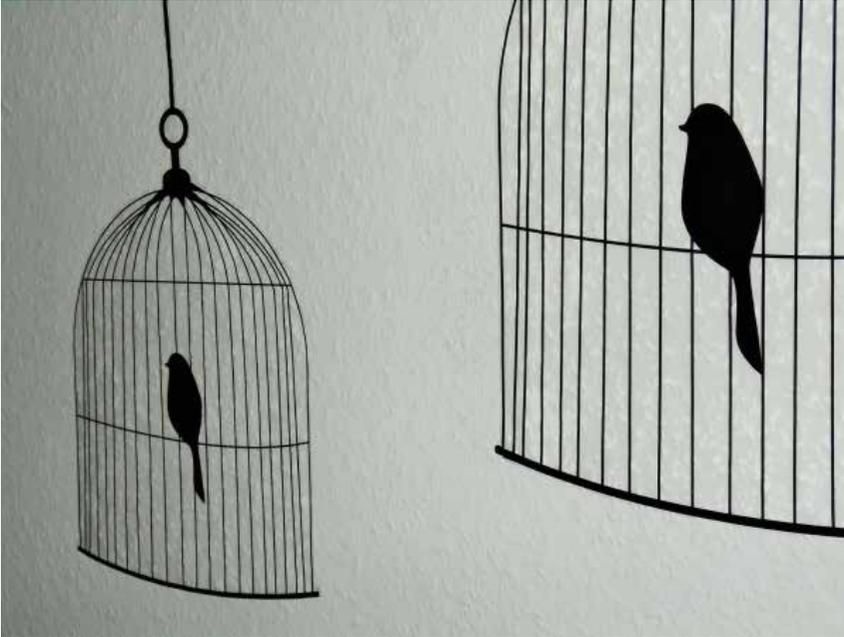
한 가정의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 가운데 각자가 책임적 존재로 단단하게 성장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돌린다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회와 국가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의 장애인이 낮 시간에는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밤 시간에는 안정적인 주거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가족과의 유대에도 흔들림이 없지 않을까요?

기고문

권혜경 / 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코호트 격리 11일째 되던 날 나는 알게 되었다. 여기는 감옥이었다.



▲ 새장 속에 새가 갇혀있는 그림. 출처 : pixabay

3월 9일 코호트 격리 시작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였다. 직원들은 “우리의 인권은 없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려면 해야 하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며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우리 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2주간 코호트 격리에 참여할 것인지, 가정에 격리되어 있을 것인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3명의 교사가 코호트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녁 잠자리에 누우니, 거주인 000 씨가 입소할 때가 생각났다. 갑자기 격리된 그는 울부

짓었다. 창살에 목을 끼우고 탈출을 시도했다. 생활관 문의 잠금장치를 흔들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몇 날 며칠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조금씩 잠잠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적응이라 여겼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었던 것일까? 적응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었을까?

3월 12일 코호트 격리 4일째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 조금만 더 자고 싶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과 국이 나왔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지 않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밥과 반찬만 먹어야 하는 거주인들 생각이 났다. 아침 6시가 되면 “일어나세요”하고 깨우고, 좀 더 자고 싶어 하시면 그래도 늦어도 아침식사 30분 전까지는 깨워야만 했다. 한겨울에는 아직 깜깜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지 않으면 밥도 반찬도 없다. 이미 잔반통으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우리 거주인분들도 생각하고 계셨을 거다. 그런데 나는 왜 그동안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3월 15일 코호트 격리 7일째

서서히 답답해져 오기 시작한다. 바깥공기가 그림다. 가족도 그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다. 외식도 하고 싶고,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고 싶고, 보고 싶은 이들도 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다. 바깥에서는 ‘스르르르’ 소리가 난다. 거주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생활관으로 들어가시는가 보다. 잠금장치가 잠기는 소리다. 식사하시고 생활관으로 거주인분들이 들어가시면 들려오는 저 소리를 평소에는 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까.

지금 나는 1층에서 3층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래도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 거주인분들은 생활관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 물론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는 사이 거주인분 중 누군가가 탈출(?)을 시도했다. 이른바 ‘실종’되었다.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불러 나와 몇 시간을 찾아 헤맨 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겪다보니 잠금장치를 하게 되었다. 그 거주인은 늘 현관문 손잡이를 쥐고 흔들었다.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나의 방문을 그렇게 잠가 놓는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잠긴 문 안에서, 거주인들 사이에서는 잦은 분쟁이 일어난다. 사회복지사들은 “문제

행동”이라는 안건으로 사례회의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분쟁은 당연한 것인 것 같다. 그 거주인이 문제행동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좁은 공간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갇혀버린 그들의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견디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다.

3월 19일 코호트 격리 11일째

나는 2019년 7월에 해고를 당했다. 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비리를 공익제보했더니,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온갖 오명을 씌워 나를 해고했다. 그러나 싸워 이겨내고 다시 복직했다. 해고 기간 동안 나는 “탈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피켓시위를 할 때마다 탈시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창살을 들고 나오셨다. ‘감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솔직히 나는 ‘저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감옥은 아닌데, 우리는 저들을 케어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코호트 격리 11일째 되는 날, 나는 알게 되었다. 여기는 감옥이었다.

이제 코호트 격리 14일 중 11일이 지나고, 남은 기간이 한 자릿수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선생님은 나가시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나는 막창이 먹고 싶어요”, “나는 강가를 걷고 싶어요”, “나는 산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며칠만 더 견디어내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주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창살에 목을 끼우고 나가려고 발버둥치던, 생활관 문의 잠금장치를 흔들고 문을 두들기며 밖으로 나가고자 했던,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희망이 있을까?

어떤 직원이 출소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팀장이 그 직원에게 다가가 험악한 말투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출소라고 했어요? 여기가 교도소인가요? 퇴소라고 하세요. 퇴소.”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한 대 치고 싶었다. 아니, 다가가 한마디 하고 싶었다.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가는 것은 출소가 당연한 것일 것이다.

3월 21일 코호트 격리 13일째

생활관에 있으면서, 여기보다 집이 좋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주인분을 보았다. 자식들 사는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 방을 얻어 생활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다. 이 분의 바깥 생활에 대한 욕구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에서 출소한다. 직원들은 짐을 싸며 모두들 한결같이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일 오후 6시면 나간다. 5시 20분부터 정말 시간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 나 혼자 탈출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본인이 만든 수제 비누를 몇 개월째 옷장 서랍에 넣어두고 면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나는 내일 우리 아들을 보러, 우리 집에 간다는 말을 못 하겠다.

처음 코호트 격리가 결정되었을 때 직원들이 한 말.

“우리는 인권도 없나.”

나는 지금 생각한다. ‘우리 거주인분들에게는 인권도 없나’, ‘누구를 위한 케어인가’, ‘우리는 케어라는 이유로 이들을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우리는 분명 케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이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

다음 피켓시위 때에는 나는 당당히 창살을 들고 “탈시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것 같다. 코호트 격리가 나처럼 탈시설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탈시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본다.

출처: <http://www.newspole.kr>(뉴스폴)

[도서] 「나, 함께 산다.」 오월의 봄. 201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결정문. 2019

[자료집]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 2019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9.

재난과 장애

가난하다고 더 많이
죽어야 하나?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지난 3월 대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 씨(뇌병변 1급)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활동지원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함께 지내던 분이었기에 김○○ 씨 또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혼자서 씻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몹시 어려운 상태였지만, 14일간 함께 공동 격리하며 생활지원을 해줄 인력을 찾기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김○○ 씨가 속한 기관에 대구시와 복지부에 자가 격리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4시간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인력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대구시는 김○○ 씨에게 배추와 쌀, 라면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김○○ 씨가 혼자서 힘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생각 못하는 지자체가 원망스럽고, 씹어가는 배추를 보며 속도 함께 타들어 갔습니다. 식량, 건강관리, 세탁 및 위생,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결국 동료 활동가들이 방호복을 입고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가며 일상생활을 지원해 14일을 겨우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김○○씨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모두 문을 닫자 집에서 아들을 돌보았던 제주도의 강○○씨, 광주의 유○○ 씨는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여러 형태의 장애인 기관이 있어서 장애인이 그나마 갈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이 모두 휴업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장애인 자녀의 생활지원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었고, 그것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 # 가난해서 더 아프고 더 많이 죽는 것이 당연한 사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 # 장애인이 감염증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없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실시간 보고 있기에 모두를 더욱 긴장하게 합니다.

위험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모두의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를 서두르고 있으나 면역력과 건강에 더 취약한 사람들은 지원체계의 부실로 비장애인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의 불평등을 막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그 특성상 보건 서비스 및 정보 접근에서 이미 차별과 배제에 있기에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일단은 병원 방문이 자유롭지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병원 장비로 장애인의 몸을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자체가 설계될 때 몸의 기준은 장애인의 몸이 아닌 비장애인의 몸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몸을 스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재난방송에 수어와 자막해설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제공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전달되는 문자 메시지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음성 스캔을 할 수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공적마스크 구입할 때 휠체어 접근 가능한 약국을 찾기 어려웠고, 농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 필담을 하려고 해도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사들이 대놓고 싫어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통역이 별도로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는 결국 당사자 가족, 자원봉사자, 관련 협회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모양이 보이는 공적마스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1:1 지원, 주간활동 시간 확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9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전국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24만 명에 이릅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몫으로 남겨져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1. 코호트 격리

처음 집단감염이 일어난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 5층에서는 수용자 102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임에도 신체질환이 아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이 감염되었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집단시설의 한계와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동의 최초 사망자는 20년 이상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갇혀 지내다 사망했다는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면역력 저하, 건강권 훼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가 오랜 기간 폐쇄시설에서 격리수용 된 것이

라면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방법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인실의 코호트 격리는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1인실 격리가 보장되지 않는 코호트 격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렇다 할 대응 없이 진행된 코호트 격리는 위험 앞에서 불평등함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특성이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이 면역력을 약하게 했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2. 집단 감염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94명의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밀집된 전화 부스, 환기가 안 되는 공간, 설 새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 노동조건에서 마스크도 쓰기 어려웠고,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화장실 가는 것도 확인당하는 이석체크와 응답 콜 수 확인 등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고객만족도라는 이름으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의 노무관리는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재난 대비조치 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집단감염을 부른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의 크기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을 시민의 연대로 극복하며 서로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무로 지고 있는 정부는 불평등한 사회적 약자가 위기상황에 훨씬 구체적으로 놓인다는 점을 기억하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족쇄를 풀면, 우리 모두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쪽방신문 6월호(2020. 7)

코로나19,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 / 글쓴이: 강준모 동자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보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쪽방촌 주민들을 통쳐서 하나의 취약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기술했다. 이는 가난에 대한 시혜적 담론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층위적인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고로 코로나19가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쪽방촌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서 코로나19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재난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고용 문제이다. 쪽방촌에도 고용 시장 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있다.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쪽방촌 주민들 중 20%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 30.8%는 건설노동직과 같은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아마도 쪽방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일 것이다. 평소 주 2,3회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을 해온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야무개 씨의 경우 3~4월 두 달 동안은 일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수입이 거의 90% 정도 감소했고 “코로나가 일어나고부터는 (체감상) 일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냐고 묻자 그는 “모아둔 돈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만약 실직이 장기화되면 김 씨 같이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쪽방촌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과 같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있지만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을 받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쪽방촌의 그나마 있는 의료, 식사 지원 프로그램들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실직이 장기화 되면 이들이 빈곤층을 벗어날 가능성은 더욱 더 희박해질 것이다.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이라고 적힌 보건복지부의 자활 홍보물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생계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19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을까? 필자가 동자동 쪽방촌 주민조직인 ‘동자동 사랑방’(이하 사랑방)에서 자원 활동을 하며 가깝게 지내고 소통하는 주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태도는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시기, 동자동에서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인 공원, 사랑방, 마을 골목에도 우리 사회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물었고 대부분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긴급재난 문자가 오면 혹시나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많은 주민들은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다수 살고 쪽방이라는 주거 환경의 특성상 때문에 만약 우리 마을에 감염자가 나오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동자동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고 있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익숙해진 발열체크와 방문기록표 작성 역시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일회용 마스크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거나 그 외 쪽방상담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온도체크와 이름 작성은 일상이 되었다. 주민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사랑방의 1,000원 점심식당 사업인 식도락도 코로나19 이후 테이크아웃 도시락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자희망나눔센터’의 카페도 5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실내는 이용할 수 없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동네 공원에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골목 곳곳에도 주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대부분 주민들이 마스크를 걸치고 있지만 말이다.

다행이도 아직까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곳 동자동을 포함해 전국의 쪽방촌 어디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서글픈 쪽방촌... 마스크 살 돈도 없어”(2월 13일 YTN)와 “다닥다닥 ‘쪽방촌’ 감염에 취약... 마스크도 부족”(3월 5일 MBC)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언론에서는 쪽방촌에서 집단감염사태가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이 우려의 시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물론 쪽방이라는 취약한 주거 환경의 특성상 전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환경인만큼 방역 등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방역 사각지대인 쪽방촌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단지 운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동자동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몇 달 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골목에서 만난 한 주민은 주말 동안 어느 건물에서 의심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오면 건물 혹은 골목 전체가 폐쇄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근데 얼마 후 알고 보니 감염 의심자는 쪽방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쪽방 밀집지역에 위치한 과거 쪽방을 개조해 만든 게스트 하우스에 잠시 머물렀던 해외 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쪽방촌을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하던 외부의 시각과 달리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를 하던 외부 사람이 되레 쪽방촌에 전염병을 퍼트리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가난과 빈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보자. 아직까지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공간인 쪽방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쪽방촌과 우리 사회와 단절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국제장애인연맹-IDA 장애 포괄적 코로나19 대응방안 10개 권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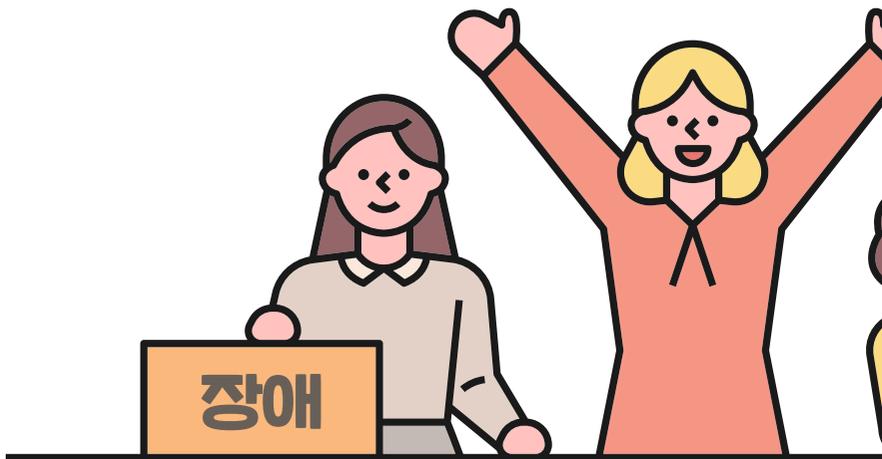
- 장애인은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유형의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식 개선과 대응 인력 교육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모든 준비 및 대응 계획은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및 방입은 용납될 수 없다.
- 격리 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물리적 및 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공공 규제 조치 시,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 포괄적 대응 미래에 있어 장애인 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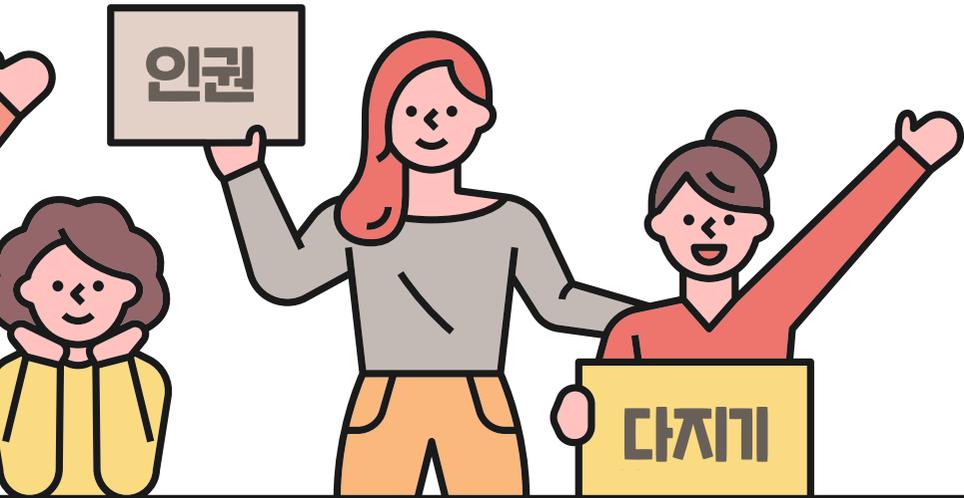
[자료집] 코로나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2020

[잡지] 국가의 재난 때마다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립·방치돼야 하는가 왜? 함께걸음 374호. 2020

[기사]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동아시아언스 2020

[영상] ‘감염병의 무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020





사례로 장애인권 다지기

3-9.

재난과 장애

가난하다고 더 많이
죽어야 하나?

1. 사례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이○○ 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씨는 심한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음성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손짓이나 표정 및 짧은 발성 등 보완대체의사소통(AAC)으로 간단한 의사확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일 이○○ 씨는 동행한 활동지원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김 주무관은 이○○ 씨의 장애를 확인하고는 “장애인은 인감이 없을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활동지원사의 설명으로 이○○ 씨의 인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김 주무관은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번의 대화도 시도해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다시 이○○ 씨가 손짓과 표정 등의 표현으로 의사확인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김 주무관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주민센터에 자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과 자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무원들은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이○○ 씨와 활동지원사의 항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 핵심 이슈 ▶▶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 # 위 사례에서 김 주무관의 행동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 # 의사소통의 불평등은 어떻게 차별로 연결될까요?
- # 언어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1.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와의 정보공유, 소통, 교감, 상호작용, 다양한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의사소통'을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의사소통은 단지 목소리음성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음성언어만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만연할 때 음성 이외의 소통 방법으로 소통해야 하는 사람은 소통 과정에서 무시와 차별,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김 주무관은 민원인인 장애인당사자가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활동지원사의 설명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일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과의 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금지와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가 확보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임명순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 서비스에 대한 뇌병변성인의 요구분석>(2018)에 따르면, 대화 상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1순위로 '우리는 조금 느리니까 기다려 달라'였습니다.

다. 이는 개인의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대화 상대의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인식개선과 권리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관련된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3항 및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의사소통 접근의 장벽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3.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의사소통)란?

말, 수어 이외에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제스처, 표정 등 비언어적 교감을 통한 의사소통

예) 보조기기의 터치, 손끝지시 등 몸짓을 통한 의사소통

예) 헛기침, 구어,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4. 생각 넓히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의사소통권리 관련 자료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2020년 9월 1일 개소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종류

· No tech AAC - 복합적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AAC

예) 손짓, 표정, 의사소통조력인 등



· Low tech AAC - 낮은 기술이 적용된 AAC

예) 글자판, 그림카드 등



· High tech AAC – 복합적인 기술이 적용된 AAC

예) 마이토키, 진소리 등 의사소통보조기기



· 주변 보조기기 – 당사자와 AAC를 연결시켜주는 AAC 접근 주변 보조기기

예) 거치대, 블루투스스피커, 키보드, 헤드마우스 등



국내 의사소통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현황과 한계

사업명	지원내용	한계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 ✓ 단 3주간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형태 ✓ 지원 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탈락 기준 모호 ✓ 수시 신청 불가 ✓ 일시적·한시적 진행 ✓ 내구연한 5년 ↳ 5년 이내 같은 종류의 기기 신청 및 수리 불가 ✓ 모니터링 미실시로 실생활의 사용효과 설문 및 만족도 평가 부재 ✓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고려한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채 보급 ✓ 사용 관련 교육 미진행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해서 이용 가능 ✓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만 12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해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성인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제공 ↳ AAC도구 사용 훈련, 중재서비스 대화상대방 훈련, 도구대여,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경기 성남시, 전북남원시 3지역만 실시 사업대상 제각각 ✓ 편당형식 사업형태로 지역사회에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 작업치료 등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제한,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과 중복될 경우 지원 불가

사업명	지원내용	한계점
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가입 노동자, 훈련생에 한하여 보조기기 지원 ↳ 의사소통보조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훈련종료 시 반납 또는 인계
민간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언어치료실 또는 복지관 등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언어치료서비스 이용 ✓ 민간지원체계의 경우 공모사업 형태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일시적·분절적 사업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장애유형·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절적 지원서비스 제공 ▶ 수혜의 범위 한정 → 전 생애적 관점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필요 		

무료 다운가능 AAC :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 가능

1) 한국형 AAC 그림상징 검색 시스템 :

<http://220.69.171.35:8080/searchsymbols>

2) 진소리 : 안드로이드에서 다운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onglab.org.jinsoriplus>

3) 나의 AAC : 안드로이드/애플 앱스토어 다운 가능

<https://www.myaac.co.kr/web/software/apps>

4) 스마트 AAC :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다운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trac.bysonstudio.aac_space&hl=ko

부록

- 세계인권선언
- 장애인권리헌장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장애인인권현장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경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빙자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 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과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민족적, 토착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하는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

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애백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구어, 수화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부분으로서 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제 4 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실행하는 것을 삼가하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인 디자인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 (사)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아)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 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인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인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인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의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로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로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로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공공 및 민간 건강관리 윤리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특히,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건강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로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훈련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지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라)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 이 기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 서 인정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 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 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관련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개별적인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에,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뇌병변장애인인권교육 교재

인권공감

펴낸곳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동기획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진행	김지희, 박지은, 이상용
집필	강희석, 한광주, 허신행
감수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은종균(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편집	언제나 봄 그대곁에
발행일	2020년 10월 5일